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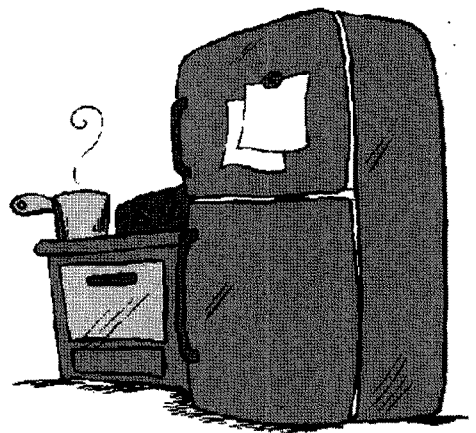


전기제품의 권장 안전사용기간 표시제 도입으로 안전사고 예방

냉장고, 세탁기 등 가전제품의 안전사용기간 표시제도 도입

개요

-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소비자가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표시하는 권장 안전사용기간 표시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- 권장 안전사용기간 표시제도는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제조자가 자발적으로 표시하여, 장기사용 제품의 경년열화에 의한 위험성을 소비자가 인식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.
 - ※ 경년열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부품, 배선 등의 절연성능 등이 저하되는 현상으로 감전·화재의 위험성이 높아짐
- 본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는 권장사용기간을 제품 구매 가이드로 활용 가능하고, 기업은 사고 없이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어, 기업들간에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.
- 기술표준원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소비자 단체와 협의하여 기업이 권장사용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설정하여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고, 사고 책임을 회피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계획이다.



향후 추진계획

- 중장기적으로 기술표준원은 권장 안전사용기간이 경과된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 점검을 받아 안전성을 확인후 제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안전점검 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.

○ 안전점검제도는 안전 점검 안내를 소비자에게 통보하고 제조·수입업자가 안전성을 점검하는 제도로서 소비자 단체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.

- 냉장고, 세탁기, 식기세척기 3개 품목은

업체간 합의가 도출되어, 본 제도의 연내 시행을 검토하고, 전기매트 등 나머지 4개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적 의견 조율을 통해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.

○ 소비자가 제도 도입을 가장 원하는 품목은 전기매트로서 기술표준원은 제조자·소비자 단체와 협의하여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.



의견수렴 및 기대효과

- 이러한 제도 도입을 위해 기술표준원은 장기간 사용시 사고 위험이 높은 전기용품을 조사·분석하여, 냉장고, 세탁기, 식기세척기 등 7개 품목을 권장 안전사용기간 표시대상으로 선정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였다.

※ 7개 검토 품목 : 전기매트, 냉장고, 선풍기, 세탁기, 식기세척기, 모발건조기, 전기온수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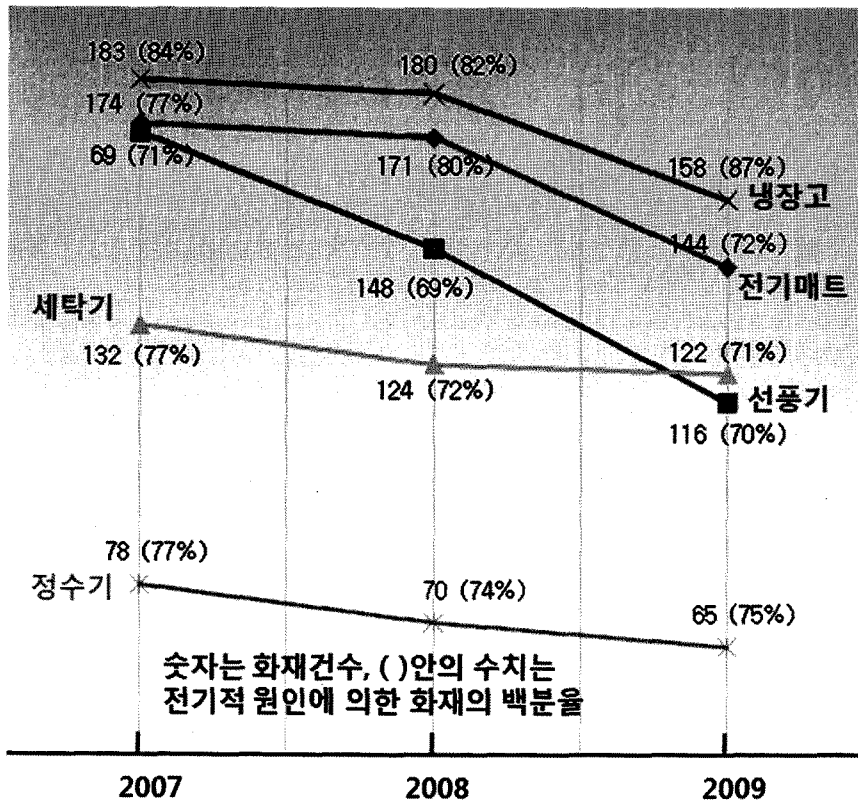
※ 업체의견 수렴결과 업체중 96%가 권장 안전사용기간 표시에 찬성(이중 61%의 업체가 강제 시행을 요구)하여 본 제도 시행에 대하여 업계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.

- 매년 1,800여건이 넘게 발생하는 전기제품·배선의 절연열화로 인한 화재사고는 본 제도가 도입되면 상당수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※ 최근 3년간 전기제품·배선의 절연열화로 인한 화재건수 : '09년 1920건, '08년 1946건, '07년 1786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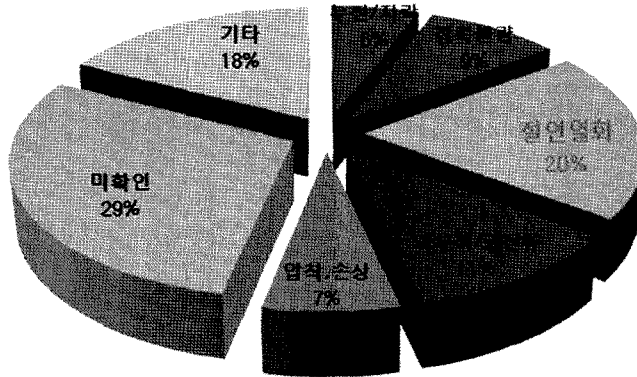
화재 사고 원인 분석 결과

- 냉장고, 선풍기 등 주요 가전제품으로 인한 사고가 매년 600건 이상 발생
- 화재 원인 분석 결과 전기적 원인이 70% 이상을 차지



〈 '07 ~ '09년 소방방재청 화재사고 원인분석 통계〉

- 전기적 원인 중 제품의 장기사용에 따른 부품의 열화로 인한 화재 비율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
- '09년 9,391건의 전기화재 중 '전기제품/배선의 절연열화'로 인한 사고 비율이 20.5%(1,920건)으로 가장 빈번
- ※ 절연열화는 경년열화의 일종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부품·제품의 절연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으로 감전·화재의 위험성이 높아짐



〈 '07 ~ '09년 소방방재청 화재사고 원인분석 통계 〉

초기 품질기준으로 예방이 어려운 경년열화에 의한 잠재적 위험성을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안전한 제품 사용 기간을 제조자가 자발적으로 표시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

권장 안전사용기간 표시 및 안전점검 제도 개요

■ 권장 안전사용기간 표시제도

- 장기사용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전기용품에 대해 표준사용조건하의 권장 안전사용기간을 제조자가 자발적으로 표시하는 제도
 - ※ 일본은 선풍기, 환풍기, 에어컨, 전기세탁기, 전기탈수기, TV의 5개 품목에 대하여 개별 안전기준에 권장 안전사용기간 표시를 의무화 ('09.4월)
 - ※ 제조자간 수명기준의 상이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표준사용조건 설정이 필요하며 업체간 합의를 통한 결정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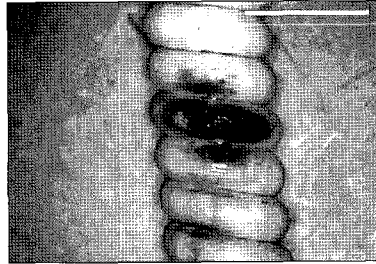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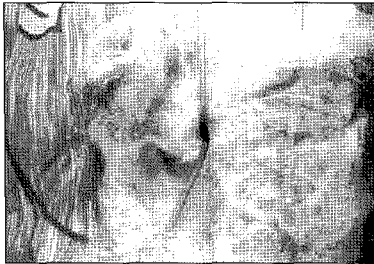
■ 안전점검 제도

- 권장 안전사용기간이 경과된 제품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점검 안내를 통보하고 제조·수입업자가 무상 점검하는 제도
 - ※ 일본은 소비생활용품안전법에 사업자 의무, 소비자 책무 등 22개조항을 신설하여 '08년부터 안전점검 제도 시행
 - ※ 일본의 경우 가스수건온수기, 가스버너부착욕조, 석유온수기, 석유욕조, 석유온풍난방기, 전기식기세척기, 욕실용전기건조기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설정



〈장기사용 전기매트의 경년열화 손상 사례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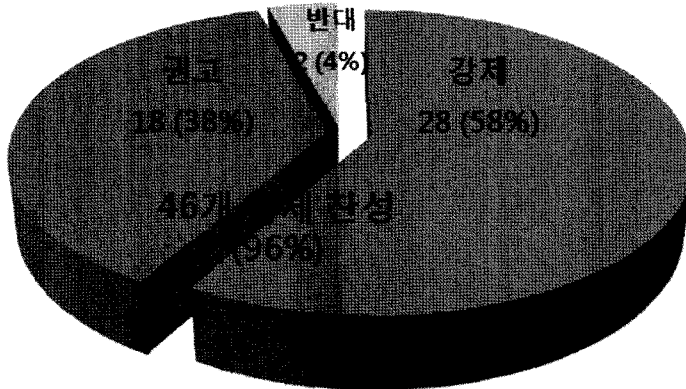
◎ 발열선의 경년열화로 5년이상 사용시 내구성항목의 부적합이 발생



사용기간	3년	4년	5년	7년	9년	10년	11년	총계
부적합률	0/4	0/2	1/10	11/12	10/10	9/9	9/9	40/56
(%)	(0%)	(0%)	(10%)	(92%)	(100%)	(100%)	(100%)	(71%)

권장 안전사용기간 표시, 안전점검 제도에 대한 업계 의견

■ 권장 안전사용기간 표시제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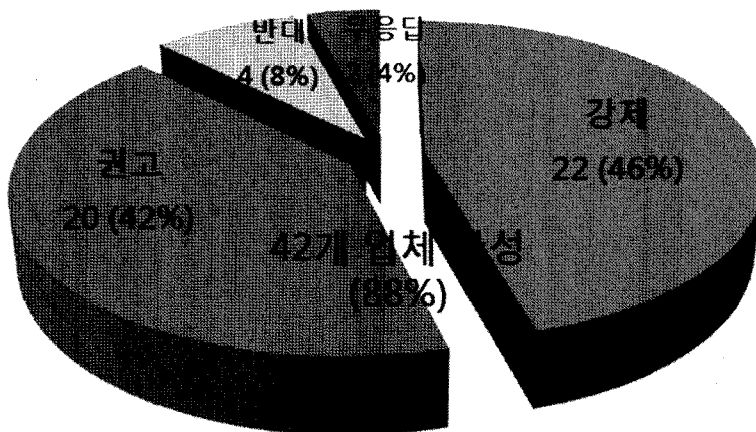
※ 반대 업체는 권장 안전사용기간 표시제도 단독시행에 반대하며, 안전점검 제도와 병행 시행시 찬성

〈권장 안전사용기간 표시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〉

○ 업계 의견

- 냉장고, 세탁기, 식기세척기 등을 생산하는 대기업은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권장 안전사용기간 표시와 안전점검 제도를 동시에 강제 시행하기 원함
- 중소기업의 경우 강제, 권고에 대하여 의견이 양분됨
- 매트 업체에서는 3년 이내의 짧은 권장 안전사용기간 설정을 원함
- 제도 시행시 사용자의 의무와 제조사의 책임을 명확히 해주길 원함

■ 안전점검 제도



〈안전점검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〉

○ 업계 의견

- 대기업은 강제시행을 원하나, 중소기업은 강제, 권고에 대하여 의견이 양분됨
- 매트 업체에서는 안전점검 주기를 2년 이내로 짧게 하기를 원함
- A/S, 안전점검시 반드시 제품 제조사에서 관련 업무 수행을 원함